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대검찰청에 공무원직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지방검찰청에 특허청과의 협업으로 첨단 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을 기술직군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24.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검찰주사 1명)”을 “검찰주사 1명) 및 공무원 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 1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한시정원) 첨단기술의 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검찰청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515”를 “517”로 하고, 일반직 계 “515”를 “517”로 하며, 검찰사무관 “46”을 “47”로, 검찰주사 “80”을 “81”로 한다.

별표 2 중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39”를 “40”으로,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5”를 “26”으로 하고, “전기운영서기 1”을 삭제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검사 외의 지방검찰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의2 관련)

제20조의2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 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 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 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검 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 (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 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 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 으로 임용한다. ⑤ ~ ⑧ (생 략)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② (생 략) ③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u>검찰주사 1명) 및 공무원직 근로</u> <u>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u> <u>(검찰주사 1명)---</u>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u>4.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u>

④ 삭제 ⑤ (생략) <u><신설></u>	<u>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u> ⑤ (현행과 같음) <u>제20조의2(한시정원) 첨단기술의</u> <u>유출 범죄 수사 관련 자문 업무</u> <u>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u> <u>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u> <u>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u> <u>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u> <u>시정원을 지방검찰청에 두며,</u> <u>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기</u> <u>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은</u> <u>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u> <u>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u> <u>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u> <u>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u> <u>다.</u>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검사 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15</u>	<u>517</u>	+2
일반직 계	<u>515</u>	<u>517</u>	+2
.	.	.	
.	.	.	
검찰사무관	<u>46</u>	<u>47</u>	+1
.	.	.	
.	.	.	
검찰주사	<u>80</u>	<u>81</u>	+1
.	.	.	
.	.	.	

[별표 2]

검사 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 공무원정원표
(제2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u>39</u>	<u>40</u>	+1
·	·	·	
·	·	·	
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u>25</u>	<u>26</u>	+1
·	·	·	
·	·	·	
<u>전기운영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10</u>	<u>9</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8